해외 R&D센터 유치관련 법규정비 방안 보고

1. 검토 배경

□ 동북아 R&D 허브의 구축을 위하여 해외 R&D센터의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

○ 대통령께서 해외 R&D센터 유치에 있어서 R&D 관련 법규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개정·적용할 것을 지시하심('04.2, 산업자원부 업무보고 시)

- 그간 전문가팀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고드림

2. 추진 경과

□ 연구용역, 전문가 연구팀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

○ '04.3～'05.5월 과학기술부, 산업자원부에서 부처단위 연구용역 수행

○ '05.3월 KOTRA, ETRI 등의 법률·지재권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 구성

- 주요 해외 R&D센터 현장 방문 및 문제점 파악(붙임 1)

○ '05.12월 관계부처 협의(과기혁신본부, 재경, 과기, 법무, 산자, 정통, 병무 등)

□ 연구개발 관련 주요법규 정비

○ 주요법령 정비현황

- '04.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: 투자 유치제도 운영의 지자체 권한·책임 강화
- '05.9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: 외국 연구원 영주자격(F-5) 부여

○ 주요규정 개정 : 과기부('05.1, '05.8), 산자부('04.5), 정통부('04.10, '05.9)

※ 외국인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지원 관련법령 현황 : 붙임 2

3. 국제적 표준(주요국 사례)

□ (미국·EU 등 선진국가) 해외 R&D센터의 유치를 위해 특별한 시책을 강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, 내·외국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향

○ 해외 R&D센터가 자국에서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토록 제도운영

□ (아일랜드) R&D시설 설치 외국기업에게 설치 및 연구비용의 최대 20%를 2년 범위 내에서 지원(R&D Capability Grants Scheme) 등

□ **(싱가포르)** 자국내 등록 모든 기업에 대하여 **R&D 비용에 대한 이중세액공제 및 금융지원** 인센티브 제공

□ **(중국)** '01년 **WTO 가입을 전후로 R&D센터의 유치를 적극 추진**

○ '02년 **R&D센터 설립 장려분야와 우대조건들**을 구체적으로 제시

※ 중국의 특징은 상대와 사안에 따라 협상조건을 달리하면서 유연하게 대처

○ **다국적기업 R&D센터 설립**이 '02년 252개에서 **'04년 690개로 급증**

◇ 세계적으로 **보편적인 국제적 표준**(Global standard) **도출은 어려움**

○ **선진국이나 경쟁국**은 자국 상황에 따라 **개별적인 법·제도** 운영

☞ **우리는** 중국 등과 경쟁 측면에서 **개별과제별로 지원제도를 정비**할 필요

※ 참고 : **우리나라의 해외 R&D센터에 대한 지원제도 현황**(붙임 3)

4. 해외 R&D센터[1] 의 국내 설립 현황 및 분석

□ 정부부처 유치 **R&D센터**

○ **차세대성장산업을 중심**으로 유치활동 적극 전개

- '05.12월말 기준으로 **과기부 8개, 산자부 10개, 정통부 10개를 유치**
- **세계적 연구기관**(파스퇴르), **다수국 연구기관**(APEC 기후센터), **다국적 기업 R&D센터**(듀폰, 지멘스) 등을 유치(붙임 4)

○ 해외 R&D센터의 증가에 비해 **국내 기술발전 기여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**

- 일부 **본격적 연구개발 지연**이나 **투자 후속조치 불이행 사례** 발생
-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**공동연구개발 등이 미흡**
- 향후 국가적 목표와 연계한 **체계적인 타겟팅과 점검·평가 노력**이 요청

□ 기타 **외국인투자기업 부설연구소**

○ 외국인투자기업(10만달러 이상 투자)의 연구소는 **'05.8월말** 기준 **총 898개**로, **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**

※ '00년 175개 → '01년 127개 → '02년 74개 → '03년 9개 → **'04년 -10개**

○ **국내 유치환경**의 조사 결과, **IT 및 통신기술의 발달(43.5%)이 강점**으로, **핵심 원천기술의 부족(40.2%)이 약점**으로 분석('04)

○ 국내 유치 확대를 위한 **개선사항으로는** ①**행정절차 간소화(31.6%)**, ②**조세감면/현금지원 확대(27.8%)**, ③**연구개발 인력 지원(20.6%)**으로 분석('04)

---

1) 여기서는 해외 R&D센터를 '정부부처가 유치한 R&D센터' 외에 '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설연구소'도 함께 기술

5. 주요 과제별 현황 및 개선방안

◇ 용역연구 및 현장방문을 토대로 총 3개 분야 7개 개선과제를 도출
- 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및 현물부담 개선, 사후관리 강화 등 행정제도 개선 4개 과제
  - ※ 해외 R&D센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유인을 제공(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,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 사례가 거의 없음)
- ○ 조세감면/ 현금지원 2개 과제 및 연구개발 인력지원 1개 과제

1 국가연구관리규정 정비 등 행정 제도 개선

1-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의 귀속

□ (현황/문제점) 해외 R&D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,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관리전문기관의 소유

※ 해외 R&D센터에게는 우선실시권을 부여하고, 기술실시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

□ (외국사례) 정부출연금 지분의 지식재산권을 해당 R&D센터에 귀속 경향

※ 정부의 무상사용권 확보, 외국유출방지, 지재권 회수 권한을 통해 제도적 보완

□ (개선방안) 해외 R&D센터에게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귀속토록 일반원칙 수립 검토(과기부)

※ 공익성 및 국익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관리규정의 세부기준 정비('06 상반기 정책연구 후 추진)

1-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물부담 인정범위 확대

□ (현황/문제점) 현물부담 인정조건이 직접경비의 일부로 한정되는 등 국제적 표준에 비해 엄격하여 참여의 폭을 제한(국가연구관리규정)

※ 현물부담 제한조건 : 소속 연구원 인건비(대기업은 현물부담액의 50% 이내), 기타 연구기자재,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로 한정

□ (외국사례) 미국, EU 등은 연구에 소요되는 모든 유·무형의 것을 현물부담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

□ (개선방안) 현물부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관리규정 개정 추진('06 하반기, 과기부)

※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비 항목, 기준 및 절차 등 현물부담 관련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

1-3	기술자산의 현물출자 시 평가 지원

□ (현황/문제점) 기술자산의 가치평가 **수수료**가 비싼(평균 약 1,300만원) 점 등 국내에서 **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정착 미비**가 활성화에 애로

※ **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술자산**이 평가기관에서 **가치평가**를 받은 경우 **외국인 투자의 출자목적물로 인정 가능**(외촉법)

□ (개선방안) 기술평가 비용 지원방안 검토('06년, 산자부)

1-4	해외 R&D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□ (현황/문제점) 당초 약속했던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, 외촉법 등에 의한 수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**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**

○ **유치기관 상호간 협조 부족 및 R&D센터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미흡**

□ (개선방안) 유치된 해외 R&D센터에 대한 **사후관리 규정 마련**(과기부)

○ **유치기관간 공동 활용 홍보자료 제작, 세미나 개최 등** 협력활동 강화 및 **원스톱서비스 제공체제** 마련(과기부, 각 부처)

② 조세감면 및 현금 지원 제도 개선

2-1	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기준의 현실화

□ (현황/문제점)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**인정 투자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**

※ **현금지원 기준**(외국인투자촉진법) : 인정투자금액 500만불 이상/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경력 3년 이상 연구자 20인 이상인 경우

○ **조세감면**을 위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**BT 등 첨단 분야가 포함되지 않음**

□ (외국사례) **중국, 말레이시아 등은** 다양한 **조세·현금·금융 지원제도** 운영

□ (개선방안) **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안 마련**('06년, 산자부)

○ 외국인투자 **지원기준의 하향조정 및 지원대상 분야의 확대 추진**

2-2	비영리 연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혜택 부여

□ (현황/문제점) **비영리 연구법인 형태**로 설립된 해외 R&D센터의 경우 **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, 현금지원 등에서 제외**

□ **(외국사례)** OECD, IMF는 **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**

□ **(개선방안)** 비영리 연구법인에게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**과학기술기본법, 기술개발촉진법 등 개정 검토**('06년, 과기부)

3 연구개발 인력 지원 제도 개선

3-1	우수 연구인력 확보 지원

□ **(현황/문제점)** 대부분의 해외 R&D센터가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**전문인력 (병역특례)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**

○ **방문연구원**의 경우 **비취업 비자 적용**이 어려워 **국민연금 부과 사례**

※ 비취업 비자(유학, 산업연수 등)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 면제

□ **(개선방안)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**('06 하반기, 과기부·병무청)

○ **방문연구원**에게 **비취업 비자 적용**('06 상반기 **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,** 법무부)

6. 향후 추진방향

□ 본 보고를 토대로 **과기혁신본부**에서 관계부처별 세부추진과제를 종합하여 **'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'에 안건 상정**

□ **과기혁신본부**는 관계부처간 '해외R&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' 등을 통하여 **후속조치 추진 및 주기적으로 점검·관리**

○ **제도개선** 이외에 **현장의 적극적인 운용 의지의 강화**에도 중점 노력

○ 해외 R&D센터의 단순한 유치 확대보다 **성과 및 파급효과 극대화** 추구

[붙임 1] 해외 R&D센터 현장 방문조사 주요결과

일자	방문 기관	애로 사항
‘05. 5.12	한국생명공학연구원 프레드허친슨협력센터	- 대전시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**연구비 미지급** - 프레드허친슨의 **기술가치** 인정
‘05. 5.13	DuPont(듀폰)	- **외촉법 인정기준**이 너무 높음(500만불 FDI, 석사경력10명이상) - **현금지원 인정기준**도 너무 높음 - **인건비, 기술 등** 실질적 R&D투자가 **투자액으로 인정되지 않음** - **외촉법이** 제조업 중심이어서 **R&D 업종에는 맞지 않음**
‘05. 5.17	CELLTRION (셀트리온)	- **현금지원 인정조건**이 너무 높음 - **국가 R&D사업 참여** 희망, 사업 참여시 **지재권의 기업 허용** 요망 - 외국기업 고위인사들의 **입국편의 제공** 요망
‘05. 5.18	MicroSoft (마이크로소프트)	- **전문인력 확보** 곤란 - **정부기관 간 행정 불일치** - 외국인 투자금액(FDI) 산정 시 **인건비 반영** 요망 - 국가 R&D사업 참여시 **지재권의 기업 허용** 요망 - 유치된 외국기업의 **사후관리 전담기관** 필요
‘05. 5.24	한국3M	- 기 유치된 연구소가 **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** 필요 - **외국인**의 한국 사회내 안정감 증진 필요
‘05. 5.26	한국 파스퇴르 연구소	- **정부출연금 관리**에 융통성 요망 - **조세혜택** 확대 - **지재권 소유**에 관한 한국 측의 전문성 확보 요망 - 외국계 연구원의 **국내 거주환경** 개선

[붙임 2] 외국인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지원 법령 현황

구분	주요 법령	주요 내용
연구개발활동	○과학기술기본법	-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원칙 규정 -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등
	-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(이하 '국가연구관리규정')	-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, 선정, 평가 -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(양도) -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
	○기술개발촉진법 ○기술이전촉진법	-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, 실시권 - 지재권의 기업에 대한 무상 양여 등
외국인투자지원	○외국인투자촉진법	-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- 내국인 대비 각종혜택 부여 등
조세지원	○조세특례제한법	- 연구개발 조세특례(손금산입, 세액공제 등) - 외국인기술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
연구인력	○출입국관리법 ○병역법	- 외국인투자가 및 연구인력의 체류자격 -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지원제도

[붙임 3] 해외 R&D센터에 대한 지원제도 현황

구 분	지원내용	근거법령	비 고
현금지원 (Cash Grant)	◦500만불 이상의 R&D 투자 시 -토지매입·임대료, 건축비, 연구기자재 -고용 및 교육·훈련보조금 등	외국인투자촉진법	지원비율은 투자규모, 협상 등에 의하여 결정
재정·금융 지원*	◦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-연구개발비의 전액(일부) 출연 ◦ 정부가 운용하는 과기진흥기금, 정보화촉진기금 등 융자 지원 ◦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개발·기업화자금의 투·융자 지원 ◦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개발자금 지원	기술개발촉진법 등	과기부·산자부·정통부 과기부·정통부 재경부 재경부
부지공급	◦ 외국기업 전용단지 : 무상임대 또는 75% 감면 ◦ 외국인투지지역 : 100 감면 ◦ 자유무역지역 : 최대 100% 감면 ◦ 관세자유구역 : 상동	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정법 국제물류기지육성법	산자부 시·도지사 산자부 재경부
연구인력 지원	◦ 석·박사급 연구인력의 병역특례 지원 -3년간 근무조건으로 병역 면제 ◦ 신진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	병역법	

구 분	지원내용	근거법령	비 고
조세감면	◦ 소득세·법인세 - 최초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◦ 취득·등록·재산·종토세 - 최초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◦ 관세·특소세·부가세 - 신고 후 3년 이내 통과 시 100% 감면 ◦ 외국인 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- 최초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◦ 고도기술 제공자 소득세 감면 - 최초 5년간 100%, ◦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- 최초 5년간 100% ◦ 기타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을 위한 주요 조세감면제도 -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(수입금액의 3%) -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%) -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 공제(투자금액의 7%) -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(해당 관세의 80%) -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(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·소득세의 50%)	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	재경부

[붙임 4] 주요 부처의 해외 R&D센터 유치현황('05.12월 기준)

부처	연구소(분야)
과학기술부 (8개)	· 파스퇴르(생명공학) · 카벤디쉬(나노 · 광전자학) · 러 국립광학연구원(광학) · Battelle(흡입독성) · NIH(결핵신약개발) · RIKEN(NT/BT/IT융합기술) · APEC기후센터(기상분야) · 국제분자생물사이버랩(BT분야)
산업자원부 (10개)	· 지멘스(의료기기) · ATI(DTV) · TI(반도체) · STMicroelectronics(반도체) · National Semiconductor(반도체) · JATCO(자동차) · Photronics(반도체) · Agilent(무선RF모듈) · Dupont(정보전자소재) · AMD(반도체 설계)
정보통신부 (10개)	· Intel(디지털홈.무선통신) · IBM(텔레매틱스) · Fraunhofer IGD(가상시뮬레이션) · HP(RFID) · Siemens(Network장비) · Agilent(무선RF모듈) · Microsoft(모바일Device) · Sun(모바일S/W) · On-Semi(모바일Solution) · AMD(반도체 설계)